

아버지 교실	“우리 아빠 최고!” 1강 원더풀 아빠의 청춘(김현수) 2강 아빠같은 아빠가 될테야- 까칠한 자녀와 소통하기(송형호)	- 강의 2회 진행 - 직장인, 아버지 70여명 참가 - 후속 강의: ‘아버지, 사랑하면 아ι와 함께 놀아라’ 진행(백운중 교사 김영일) - 후속모임 매월 진행 중	★★★★★
	“지금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 몸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공동체 놀이 - 강의- 까칠한 자녀와 대화법 - UCC 동영상 관람-폭력과 장난 사이, 우리 반 재민이- 가정, 학교, 지역의 비폭력대화 실습 - 비폭력 대화 성공사례 나눔회	- 15가족, 50명 참가 - 평화가족워크샵(공동체 놀이, 공감대화 강의 및 훈련) - 아동 대상 프로그램 : 놀이로 배우는 비폭력대화 - 평화가족캠프 : 느낌과 필요 표현하기, 발마사지 진행 - 가족과 함께 걷는 숲길 - 인권가족 골든벨 진행	★★★★☆
자녀와 함께하는 생명, 인권의 학교 만들기 캠프	학부모 학교폭력강사양성과정(학부모아동인권평화교육 강사) 6회 진행	- 강의 및 활동 6회 진행 - 참가자 15명 - 강사훈련 격주로 진행 중 - 이후 지역 단체 및 학교에 재능 기부 예정	★★★★★

[사업별 보고]

학부모인권아카데미
‘평화로운 아이가
평화로운 학교를 만든다’
자체 평점 : ★★★★★

1. 기획의도

- 학교 내 폭력 문화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생명과 인권의 존엄함을 확인하고 지역 및 학교 내 공동체적 돌봄을 꾀하고자 함
- 교육청과 지역사회 교육운동단체 협력의 토대구축
- 교육청, 학폭위, 상담교사 등의 참여로 학교 폭력에 대한 공론화 및 소통의 장 마련
-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고, 학생인권조례 안착화 및 실현

2. 진행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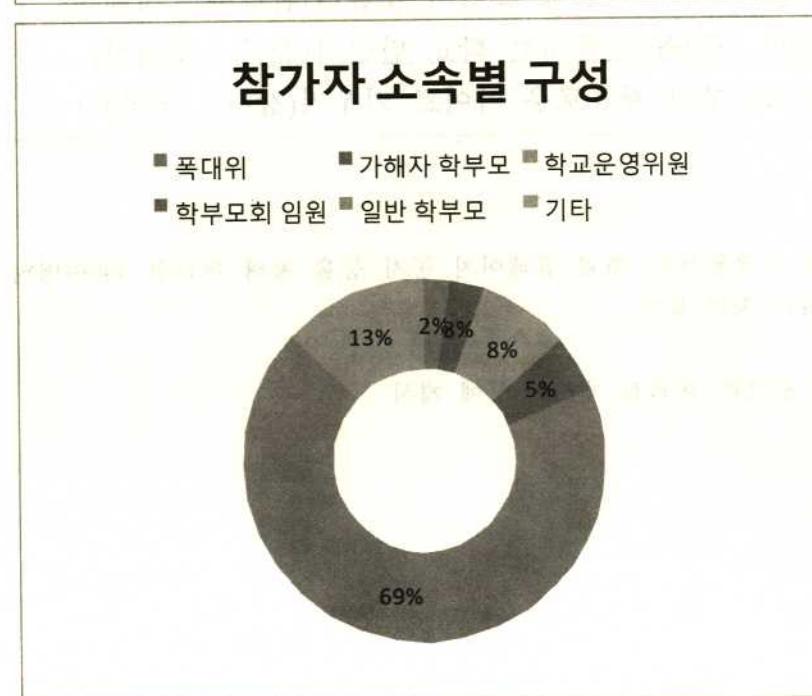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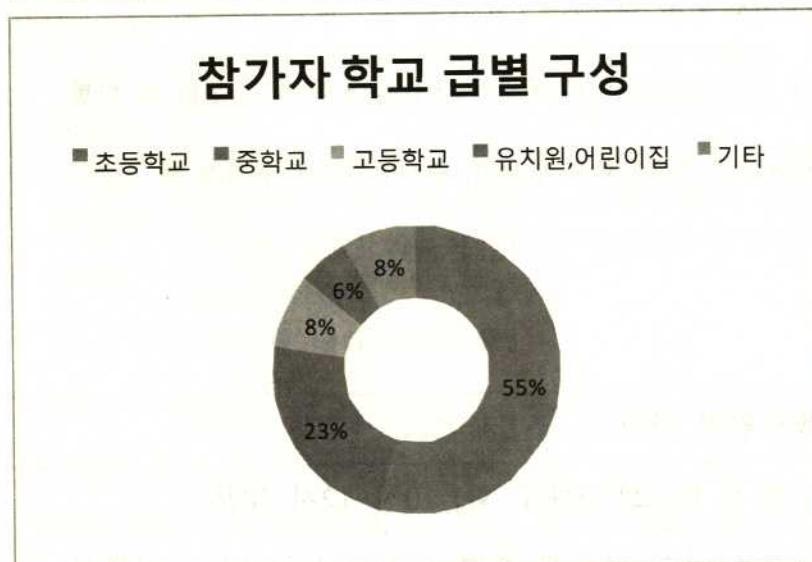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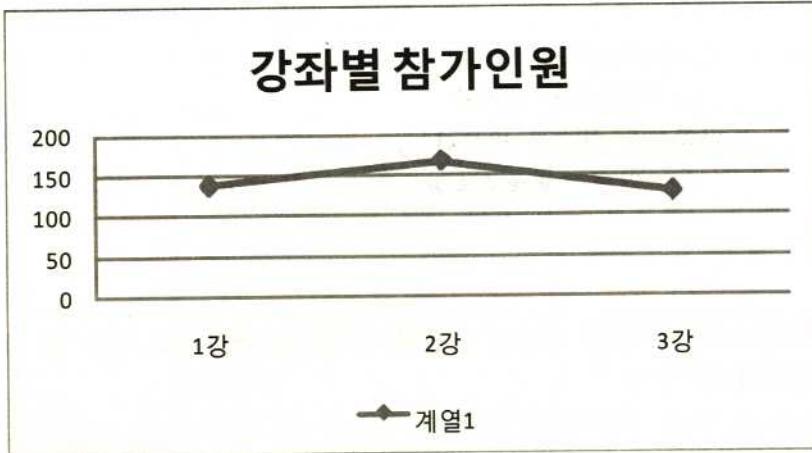
행사진행

장소	북부교육지원청 강당
시간	2012년 5월 8, 15, 22일(매주 화) 10시~12시 30분
강의	1강 상처받은 아이 마음에 폭력이 깃듭니다(강사 : 정혜신) 2강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만들기(강사 : 조영선) 3강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아이로 키우기(강사 : 송형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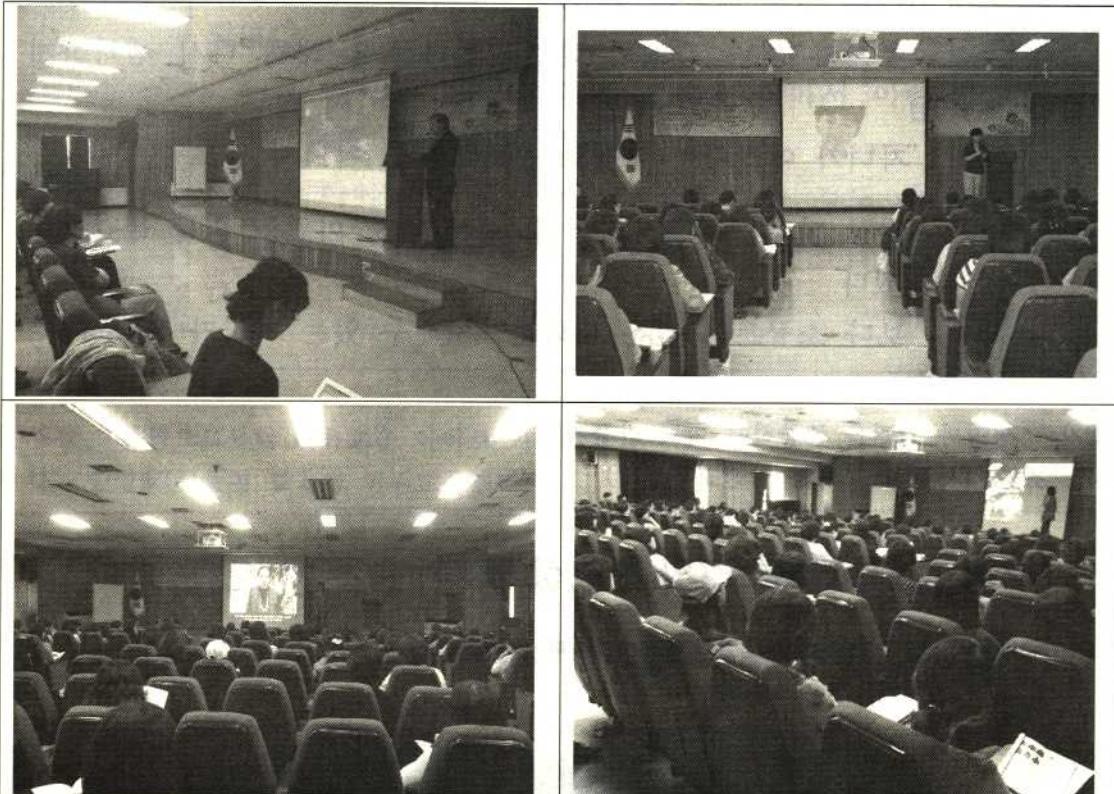
홍보

- 교육청의 협조로 학교별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연인원 450여명의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과 올림.
- 전단지를 제작하여 지역 도서관, 아파트 게시판 등에 게시

참가자(연인원 43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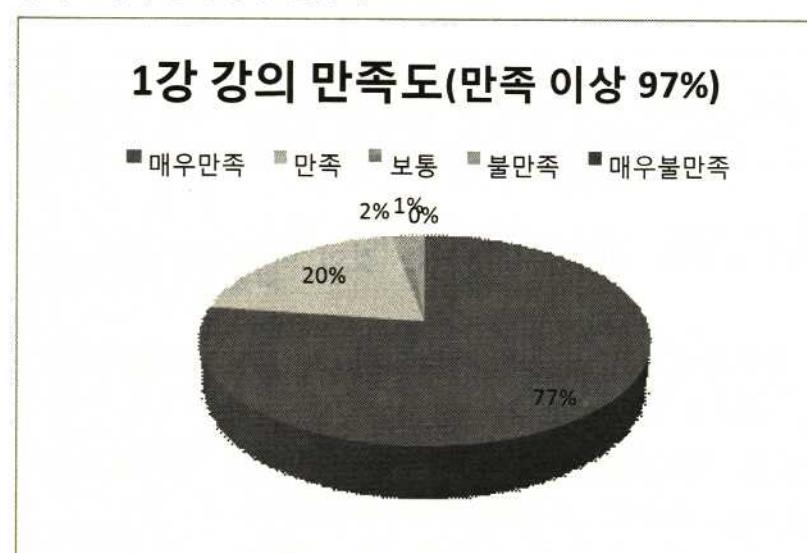
3. 행사사진



4. 참가자평가(설문지 내용 발췌 및 분석)

□ 1강_ “상처받은 아이 마음에 폭력이 깃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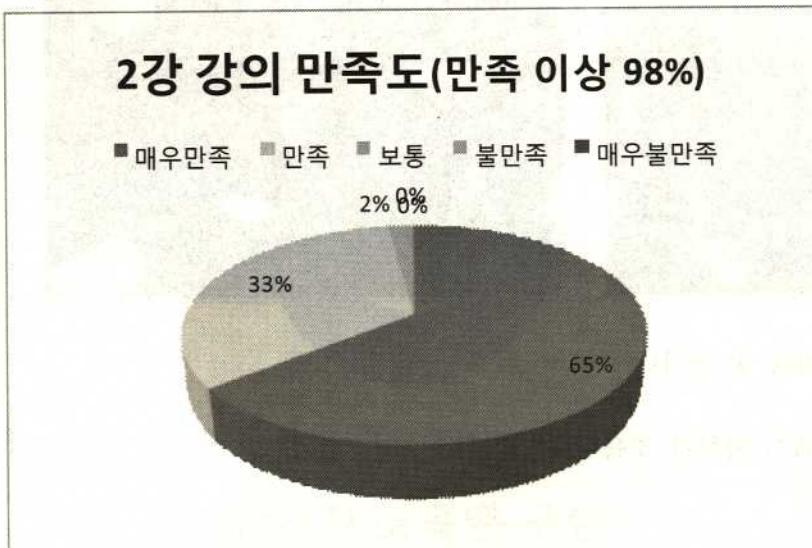
강사 : 정혜신(정신과 전문의)



강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양육태도, 방식, 언어습관 속에 나도 몰랐던 폭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부모와 자녀 관계의 본질, '엄마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됨 - 자녀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족하다고 여기지 말고 존중하자.
제안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다니는 엄마, 아버지, 교사 등도 이런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 - 보다 소규모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 2강_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만들기”

강사 : 조영선(서울시 교육청 인권교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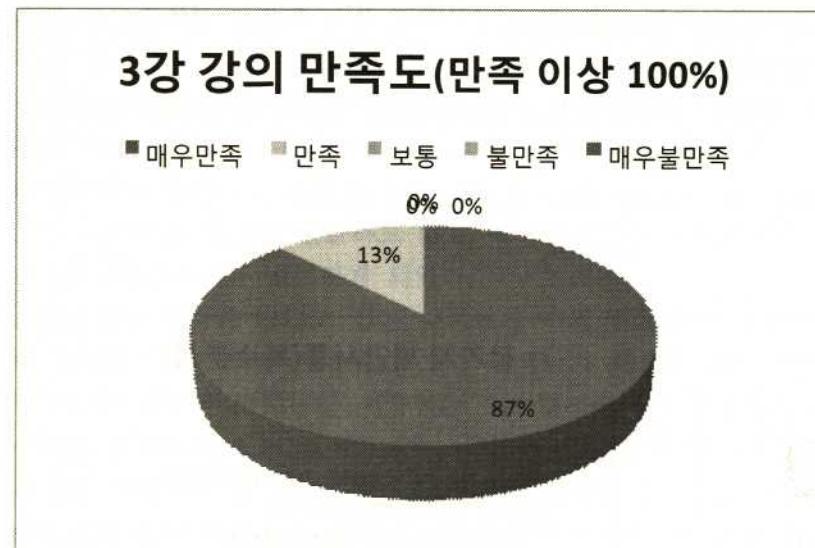


강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직 교사의 진솔한 이야기, 아이들에 대한 교사의 진실한 마음과 태도, 고민이 전달되어 학교 교육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 - 학생인권과 교사의 권리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 가정 내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다.(자신과 타인을 존중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겠다) - 학교, 아이들, 학교폭력에 대하여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보는 계기 - 진학, 자기주도학습 등 '내 아이'만 잘 키우자는 강의가 많다. 이번 기회에 '학교 전체'와 그 속의 '우리 아이들'을 보게
-------	--

제안 사항	<p>되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존중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제안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아이의 교사도 이런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의 마음을 더 잘 살필 수 있으면 좋겠다. - 지금 아이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학부모로서 해야 하는 구체적인 일들을 알고 싶다.

□ 3강_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아이로 키우기”

강사 : 송형호(서울시 교육청 인권교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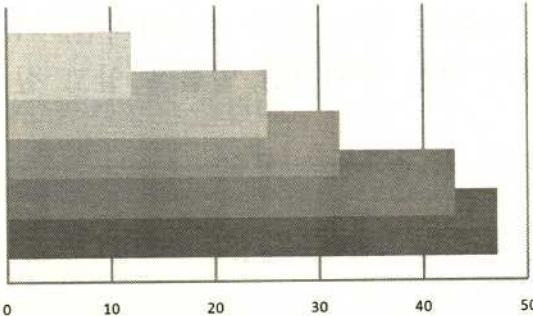


강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폭력의 본질적 문제를 알게 되었고, 아이를 이해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 폭력 예방과 관련해 개정된 법에 대해 알게 되어 매우 유익했다. - 평화적인 대화방법을 알게 되었다. - 학교 강의는 모두 재미없다는 생각이었는데, 앞으로는 참여하고 싶어졌다.
제안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돌림에 대한 대처법, 가해자/피해자가 되었을 때 대처법 등 문제 해결의 구체적 표현 방법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 - 방학 기간 아이와 함께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 총평(근거: 설문지, 후기, 인터뷰)

총평(복수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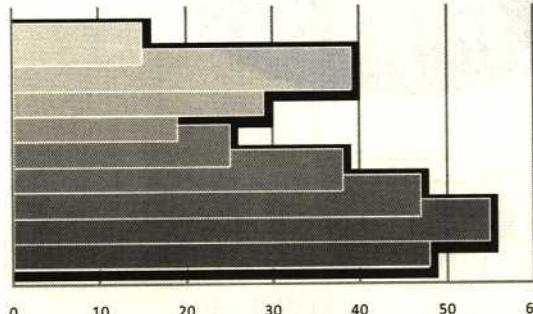


- 그외
 - 학교폭력의 키워드가 '인권'과 '평화'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학교 교육에 대한 희망을 새롭게 가지게 되었다.(교사, 학교, 교육청의 노력을 이해하게 됨)
 - 내 아이만 생각하기보다 학교 전체와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었다.
 - 학교 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

- 학교 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
- 내 아이만 생각하기보다 학교 전체와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었다.
- 학교 교육에 대한 희망을 새롭게 가지게 되었다.(교사, 학교, 교육청의 노력을 이해하게 됨)
- 학교폭력의 키워드가 '인권'과 '평화'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참가자 제안사항

참가자 제안사항(복수분석)



- 그외
 - 앞으로도 청소년을 잘 이해하는 강사가 강의를 하도록
 - 이런 강의가 진짜 아이를 이해하게 한다.
 -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조기교육은 '인권교육'
 - 인권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있으면
 - 교육청에서 꾸준히 이런 교육을 진행하길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좋은 강의를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 매학기, 분기마다 이런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 우리 아이의 교사가 듣게 되길

- 우리 아이의 교사가 듣게 되길 바란다.
- 매학기, 분기마다 이런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좋은 강의를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어야 한다.
- 교육청에서 꾸준히 이런 교육을 진행하길 바란다. 접근성이 높고, 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계기가 되었다.
- 인권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
-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조기교육은 '인권교육'이다.
- 전학, 자기주도 학습관련 강의도 좋지만 이런 강의가 진짜 아이를 이해하게 한다.
- 앞으로도 이번처럼 청소년을 잘 이해하는 강사가 강의를 해야 한다.

학부모인권아카데미 수강후기

이미란

연일 터져나오는 아이들 자살문제, 왕따 문제, 학교폭력문제로 세상이 시끄럽다. 그런 와중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아동폭력예방교육이란 것이 있어서 들으러 갔다. 서두부터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내 마음을 참으로 불편하게 만든다.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을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하였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전학가는 시대였는데 학교폭력문제가 거론되는 요즘은 가해자가 전학가는 시대로 바뀌었다고 말씀해주신다. 이름도 거창한 폭력자치위원회니 뭐니 하면서 경찰도 위원이라고 하고 안심하라고 소개해주신다. 그러면 가해자는 학생이 아니란 말인가? 듣는 학부모의 자녀는 절대 가해자 학생이 안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들어야 하는가? 편 가르기 하자는 것인가? 내 아이는 절대 아닐테니 편안하게 들으면 되는 것일까? 강의를 듣는 내내 의문이 생겼다.

올해 학교홈피를 방문해 보면 소통하는 모든 것을 단절시켜 놓았다. 쪽지도 못 보내고 종알종알 메신저도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아이들도 나도 재미없어서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선생님도 딱딱한 공지사항만 올려 놓으신다. 교육청에서 막아놓았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일까? 우리 아이들은 어느 공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만 시급히 해결하려고 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안달하고 있을 때 "평화로운 아이가 평화로운 학교를 만든다"는 학부모인권아카데미를 참석하게 되었다.

조영선샘은 왕따를 당하고 있는 아이에게 수업 진도만을 나간 방관자 선생님으로써 진심어린 사과를 하자, 다른 아이들도 그런 선생님의 태도를 보고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고 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토론할 여유없는 입시경쟁속에서 학생이라는 존재가치, 우리 아이들의 인권은 보장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아니 학교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자녀간의 본질은 사라지고 공부라는 잣대로 우리 아이들을 본 것은 아닌지 반문한다. 다행히 학생인권조례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의 인간으로써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아이들을 자식, 제자, 친구 등의 수많은 관계의 이름으로 구속하고 폭력을 행하고 당하는 것이 익숙하도록 길들인 것이다. 송형호 샘의 말처럼 폭력예방교육보다는 평화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폭력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아이들의 마음을 교육하는 정서교육을 정규과정에 넣으면 어떨까?

이런 교육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일부 학부모만 받기에, 또한 일회성으로 끝나기에 너무나 아깝다.

범죄조직으로 우리 공교육을 더럽히기에 아까운 매스컴 관계자들, 자기 아이는 절대로 폭력을 당하지도 하지도 않는다고 믿는 학부모, 가해자와 피해자로 학생을 나누는 학교 관계자분들, 학교에 전혀 관심도 기대도 참여도 하지 않는 사교육에만 의존하는 콧대높은 학부모, 그리고 자신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걸 모르는 체 자라고 있는 우리 이쁜 아이들 모두 받아서 평화로운 나와 너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폭력없는 학교를 위한 청소년 워크샵

평화로운 학교, 내가 만든다.

자체 평점 ★★★★☆

1. 기획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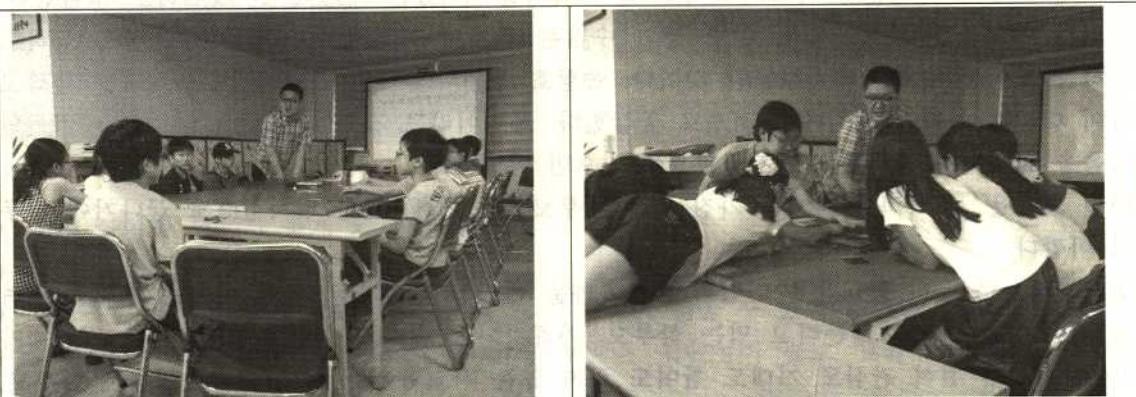
- 아동들의 인권감수성을 점검하고 자아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함

- 친구와 대화법을 실습해보고 차이와 차별에 대해 안다.

2. 진행개요

	<p>강의 5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나는 소중하다. 너도 소중하다.평화는 훈련이다 - 비폭력 대화 기법평화로운 학교, 내가 만든다.심화과정-2회 진행
행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생 2개 학년별로 3개 반으로 3회 진행 후 후속 프로그램 2회 추가 진행.- 반별로 10명 내외, 연인원 90명 참가- 총 5회 활동 후 인권 퀴즈 대회 진행- 강사와 학부모의 면담 및 평가회 진행(학부모 25명 참가)- 후속 청소년인권모임 '나는야, 평화지킴이' 운영 중

3. 행사사진



4. 참가자 후기

[활동기록]

"나는 소중해, 그러니까 너도 소중해"

어린이 인권교육 <나는야, 평화지킴이> 이야기

<내가 겪은 차별, 생활 속의 차별>

- 엄마아빠는 신발이 많은데 아이들은 적다.(친구의 반론 : 어른들은 밖에 나갈 때가 많아서 그러니 차별이 아니다. / 재반론: 아니다 아이들이 더 많다)
- 달리기가 느리다고 놀이에 끼워주지 않는다.
- 여자라는 이유로 청소를 하게 한다.
- 안경썼다고 친구들이 놀렸어요. 안경썼다고 축구에 끼워주지 않으면 차별이예요.
- 몸집이 작다고 급식을 많이 주라고 하면 차별이예요(친구의 의견 : 원치 않았다면 차별, 원하면 차별이 아니예요) 나를 위한 거라고 해도 차별로 느껴졌어요.
- 놀이공원에 있는 롤러코스터의 키 제한도 차별일까요?(여러가지 의견 : 억울하게 키만 작다고 하면 차별이예요./ 키가 작으면 다칠 수 있어서 그러니 차별이 아니예요. / 그러면 키 작은 사람을 위한 롤러코스터도 만들어줘야 해요. / 안전도구를 키작은 사람한테 맞게 해줘야 해요.)
- 나치의 유대인 학살(선생님: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극단적인 차별)
- 체육시간에 남자라는 이유로 운동을 더 많이 시키고 여자는 쉬라고 할 때
- 우리나라 땅이 작은 것이 차별이다.(선생님 :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곤란해요.)
- 뒷자리에 앉았다고 발표를 늦게 시켜요. 키 크다고 항상 뒤에 앉아야 해요.

<차별을 방지하는 방법 한 가지씩 써보기>

- 차별을 받는 사람에게도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자.
-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다.
- 자기가 먼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차별하지 않을 것
- 작은 차이로 따돌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다.
- 차별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 차별하면 처벌하고 혼낸다.(선생님의 문제제기 : 법과 제도가 엄격하면 차별이 줄어들까? 엄한 선생님 만나면?)
- 차별에 대한 법을 만든다
-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준다.
- 편견을 버리자

“평화인권교육 학부모 간담회 후기”

손경화

후기를 부탁받고 뭘 쓸까 순간 고민하다 “한번해보겠습니다”라고 한건 참학이 나에게 준 용기일지 모른다. 이곳에서 나는 의견을 이야기 할 기회도 많고, 글도 쓰고 어쩜 나의 인권이 신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내가 참학 일로 분주한 것은 참부모가 되려는 노력일 것이다. 절망과 같은 일상이었다면 좀 과장되게 들리려나? 하지만 적어도 나에겐 그랬다. 오늘 모인 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은 엄마들이란 생각이 든다. 나 역시 그 속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니 기뻤다. 우리 경주, 재서가 엄마 마음을 알까? 흥

홍의표 선생님 아니 곱돌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시는 선생님의 모습. 말투에서 친근함이 배어나왔다. 아! 아이들이 바로 이 선생님과 함께 했구나 생각하니 웃음도 나왔다.

사실 난 평화 인권교육을 3회로 진행되어 곱돌이 선생님도 이번 교육으로 아이들이 바꿔기를 기대하기엔 역 부족이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2회를 연장하여 진행해주시겠다고 하시니 무한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

아이들과 수업 진행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셨는데 ‘나는 소중해’이다. 또 진행과정 중 인상적이었던 건 ‘똥’이란 놈이 화와 같다는 것이다. 화는 똥과 같아서 결코 참아서도 참기만 해선 안 된다고 하셨다. 우리가 똥을 참으면 변비가 되거나 탈이 난다. 화도 이와 같다는 것이다. 한마디 덧붙이면 설사는 급해서 더 빨리 배설해야 하고, 된 똥은 배설하는데 뜸을 들인다. 아이들이 듣기에 이해가 빨랐으며, 잊혀지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들고, 이 얼마나 적절한 비유인가 싶다.

그리고 성별, 동양인, 서양인, 긴 머리, 짧은 머리의 각각 다른 네 사람을 보여주시며, 틀린 곳을 찾아보라 하셨다. 저마다 틀린 곳을 지적하며, 선생님의 답을 기다렸다. 역시 곱돌이 선생님은 확실한 인권교육가임을 여지없이 보여주신다. “틀린 곳은 한 군데도 없고 다름만 있을 뿐입니다.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머리모양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엄마들은 감탄사를 자아내며, “아하! 그렇구나 했다.” 나 역시 다름을 틀린 것으로 간주하고, 멀리하고 피하고 하는 행동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사실 내가 차별받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차별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기에 얼마나 내가 우매한가 생각해본다.

또한 우리는 어느 한 부분을 보고 전체를 본 양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전혀 다른 사물이 나오거나 전혀 다른 사람임을 보았을 때 놀란다. 이 또한 각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결국 그 누구도 하찮은 사람은 없으며, 그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더러는 함축해서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다보니 다소 아이들이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하시지만 사실 거저 얻어지는 건 없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어느 한 곳에 저장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튀어나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수업을 위해 곱돌이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며, 곱돌이 선생님께서 평화 인권교육을 할 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노력을 계속 될 것이다.”

평화로운 소통을 위한 비폭력대화 워크숍

자체평점 : ★★★☆☆

1. 기획의도

학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하여 상호존중감을 기른다.

학교폭력 예방과 인권존중을 함양하기 위해 가정 안에서 평화를 배우고 나아가 평화로운 지역사회 문화 창출에 이바지 한다.

2. 진행개요

평화로운 언어구사를 위한 비폭력대화 워크샵	
행사내용	<p>*강의 및 평화언어 구사 훈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민을 방해하는 대화 관찰하기/ 느낌을 알아차리기/ 표현하기 자신의 욕구를 의식하기 삶을 풍요롭게 하는 ‘부탁하기’ 공감의 힘 우리 자신과 연민으로 연결하기 분노를 온전히 표현하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돋기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8회(본 강의 6회, 후속 모임 2회 진행) - 회당 참가자 15명 내외, 연인원 110명 내외 - 강의와 훈련 진행 - 가정과 이웃 안에서의 비폭력대화 실습 사례 나누기 진행 - 후속모임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격주로 진행 중

3. 행사사진



4. 참가자 후기

참가자 후기①

“비폭력 대화 나도 할 수 있어요!!!”

송 정

오늘 두 번째 수업을 가겠습니다. 사실 첫 수업 이후 별다른 관심 없이 일상에 변화를 가져보겠다는 아무런 의욕도 없이 일주일을 보내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여섯 살 둘째아이가 자꾸 벼락 하는 저의 모습을 보더니 “엄마는 도대체 왜 이렇게 무서워?” 하더군요. 아무 생각도 없이, 나오는 대로 “무섭지? 그니까 엄마 말 잘 들어!” 이랬더랍니다.

아들은 나름 심각한 표정으로 “엄마...괴.물.같.아...!”

전 이 대목에서 완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아들의 조언! 혁!!!

“괴물은 숲. 속. 으. 로. 나. 가. 벼. 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현실을 다시 한 번 번개 치는 속도로 더듬어 봤더랬죠. 순간 ‘내가 무얼 하고 있었던 건가?’하는 반성과 가슴 한켠에 아련하고 먹먹한 통증이 스멀~스멀~ 뒷통수가 얼얼하며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을 만큼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잠이 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복잡한 감정들이 어지럽게 오가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지요.

왜 좋은 부모가 되고픈지...?

그건 나를 위해서가 아닌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그런데 그런 나로 인해 정작 아이들은 힘들어 한다는 걸, 이게 폭력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폭력을 아들에게 들켜버린 무안함 때문에 살짝 궁 눈물이 고이네요~ 오늘

하루 다시 노력 중인데 이번엔 성공해 보려구요. 할 수 있겠죠...? 21일 변화의 노력을 하면 뇌가 인식을 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인 반복 활동을 통해 뇌 회로에 길이 생긴다는 강사님 말씀.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도전해 보렵니다. 매번 무너만 좋은 부모였던 저였는데 반성합니다! 저... 할 수 있! 어! 요!!! 핫팅~ ^^

평화인권영화제

자체평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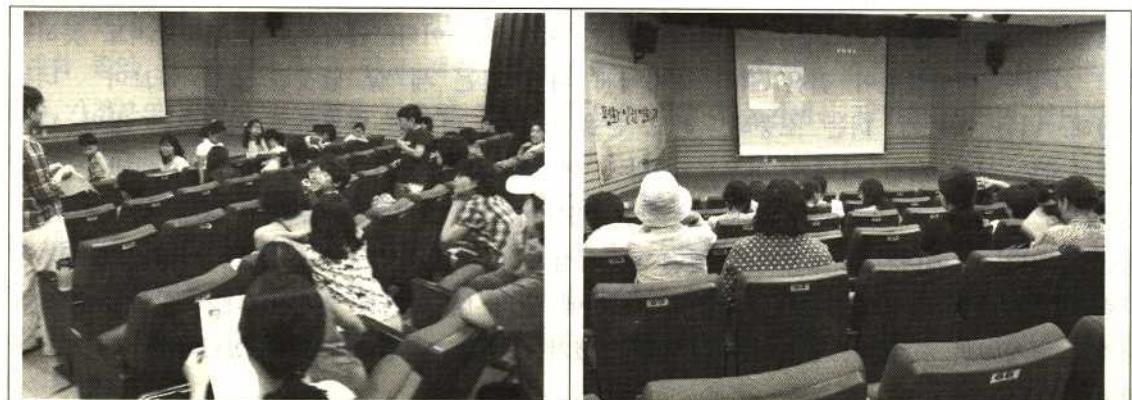
1. 기획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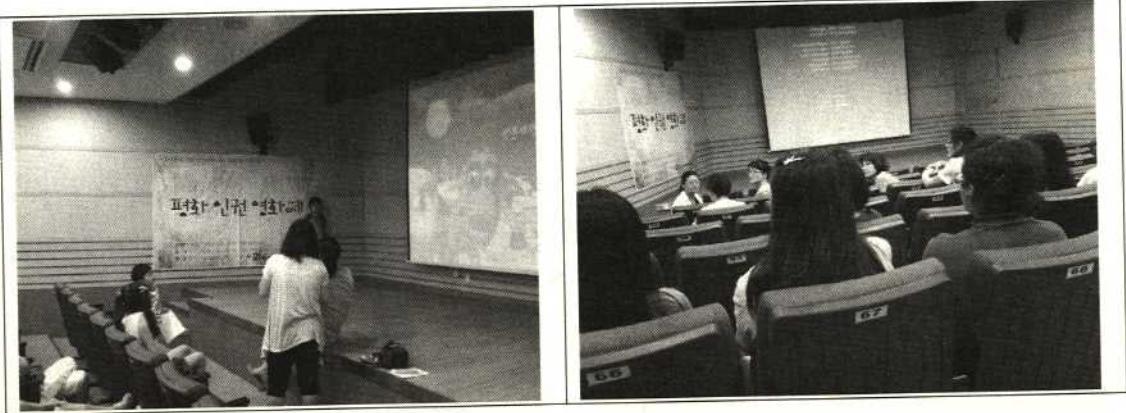
-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사회의 인권지수를 점검해보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본다.

2. 진행개요

행사내용	*평화 인권영화제-영화 상영 8회 (디벨레, 돼지가 있는 풍경, 별별 이야기, 파수꾼, 평화학교, 헬프, 1318 시선, 몽실언니 등)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및 초등학생 200여명 참가 - 영화 상영 및 전문평론가의 영화 해설, 영화 관람 소감 나누기 진행 - 방학 중에는 자녀와 함께 관람 - 이후 격주로 평화인권영화모임 ‘영화함께’ 운영

3. 행사사진





4. 참가자 후기

참가자 후기① 평화인권영화제 <헬프> 감상기_1

안혜자

참학에서 영화제를 한다고 했을 때, 첫 영화가 ‘헬프’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 영화 어디선가 좋은 영화라고 들었던 것 같아. 한번 보러 갈까?’ 싶은 마음이 들었을 뿐 영화에 대한 배경지식은 전무했다.

원제는 ‘The help’.. 영화를 보고 제목이 왜 헬프일까 궁금해 영어사전을 검색하니 맨 마지막에 도우미, 일꾼이란 말이 나온다. 제목처럼 이 영화는 1960년대 미국 미시시피 주의 백인 상류층을 위해 일하는 흑인 가정부에 대한 이야기로 당시 미국사회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한다. 흑인 가정부를 두고 가사에, 육아에 온갖 도움을 다 받으면서도 백인과 다른 화장실을 쓰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 아프리카의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위해 바자회를 열지만 자녀의 대학 학비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흑인 가정부의 부탁을 냉정히 거절하는 백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보여진다.

인종차별에 관한 이전의 영화 ‘타임 투 킬’이나 ‘컬러풀’ 등의 센 영화를 봤던지라 이 영화가 보여주는 당시의 차별에 관한 내용은 양반수준이다. 영화를 보고 가슴 속에 분노가 이글거리 폭발할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기에는 2% 부족한 듯 보인다. 그럼에도 이 영화를 보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다. 인간으로서 존중받지도 못하는 흑인 가정부 에이블린이 젊은 백인 엄마에게 외면 받는 세 살 남짓한 딸을 돌보며 ‘너는 친절해. 너는 똑똑해. 너는 소중해.’라고 눈을 맞추며 너무도 다정하게 말해주는 장면...나는 친절해. 너는 똑똑해. 너는 소중해.’라고 눈을 맞추며 너무도 다정하게 말해주는 장면...나는 엉뚱하게도 어린 시절 나에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해낸 것이다. 그리하여 성인이 다 되도록 나의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너무도 많은 정신적, 시간적 에너지를 소모해야 했던 나 자신을 떠올리며 누구든 나에게 저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소모적인 것만 같은 그 시간에 뭔가 더 대단한 일을 해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랬기에 내가 더 성숙해질 수 있었다고 위안삼아야 할까...

‘열심히 길러놔 봤자 자라면 지 엄마처럼 나를 함부로 대해.’라고 또 다른 흑인 가정부는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그랬을 테지만 적어도 에이블린이 키워낸 백인 아이들은 어렸을 적 자신을 향해 그토록 다정하게 말해준 흑인에 대해 그들의 엄마처럼 대하지는 않을거라는 희망을 갖게 해준다. 14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17명의 백인 아이들을 돌보면서 에이블린은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한다. 자신도 그 아이들에게 자부심(내 기억이 맞다면^)을 키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영화 속 또 다른 주인공 백인아가씨 스키터가 흑인 보모로부터 그렇게 키워졌고, 그리하여 흑인을 돋는 역할을 해낸 것처럼...그렇다. The help는 영화 제목이면서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면서까지 인종차별의 불합리함을 알리고자 노력했던 백인 아가씨 스키터에 의해 기록된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

이제는 미국 내의 인종차별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반성할 때가 되어버렸다. 우리나라 국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다문화가족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포용적인지... 다른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왜 이다지도 어려운지 영원한 숙제처럼 느껴진다.

●○평화인권영화제 참가자 후기② 평화인권영화제 <헬프> 감상기_2

오정혜

1960년대 리폴트 가에서 일하는 흑인 가정부 에이블린은 모든 집안 일 뿐 아니라, 리폴트 부인의 아이인 메이 모블리를 돌본다. 당신 미국 백인 여성들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과 사교모임이 인생의 전부인 때였다.

리폴트 부인도 살림이나 아이에게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을 꾸미고 사교파티에 나가는 것에 열중하는 전형적인 중상류층 부인이다. 에이블린은 지금껏 17명의 백인 아이들을 돌보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은 사고 후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 목숨을 잃고 마는 상처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마을 사교 모임의 대표 격인 힐리는 전형적인 인종차별자이다. 흑인이 질병을 퍼트린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가정부인 미니가 집 안의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가정 위생계획이라는 명목 하에 흑인과 백인의 화장실을 분리하는 법을 만들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작 자신의 아이들은 흑인 가정부 미니가 안아주고 업어주고 먹여주며 키우도록 내버려 둔 채...

대학 졸업 후, 작가의 꿈을 안고 책으로 돌아와 신문사에 취직한 스키터는 콘스탄틴이라는 흑인 가정부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 추억으로 인해 인종차별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는 친구들과 불편해 진다.

자신을 돌봐주던 늙은 가정부 콘스탄틴이 인정차별의 희생양이 되어 쫓겨났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흑인 가정부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녀들의 삶을 책으로 쓰고자 에이블린을 설득해서 마을 흑인 가정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인종차별과 무관심 속에 고통 받고 있는 암울한 흑인 가정부들의 삶과 인권에 대해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미시시피의 더운 날씨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와, 사랑하고 사랑 받고 돌봐야 할 남편의

학대 속에서도 그녀들은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끗끗이 살아가는 에이블린과 그녀의 흑인 친구들이 존경스러웠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지만, 그렇게 어렵고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현실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흑인 가정부들이 있었기에 미국 인종차별의 사회가 변화되고, 없어지지 않을 것만 같던 흑백 인종차별도 사라질 수 있었다고 생각 된다.

나는 때때로 변할 것 같지 않은 나의 부정적인 모습과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들과 남편의 모습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외면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수많은 부조리와 그 부조리들을 변화시키기에는 너무나 힘없이 약한 나를 보며 주저앉을 때가 많았다.

그런 나였지만, 이제는 희망을 품으며 한 걸음 나아가야겠다. 에이블린이 메이 모블리에게 한 말을 나에게 들려주며...

“너는 친절해. 너는 똑똑해. 너는 소중해!”

●○평화인권영화제 참가자 후기③

〈P짱은 내 친구〉 감상기

황희남

내가 키운 돼지 키울까, 잡아먹을까 제목을 접했을 때 영화가 어떻게 진행될까 의아해 했다. 그런데 1990년대 오사카의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이뤄진 실험적인 수업을 영화화한 작품이라구 하니 더 눈여겨보게 되었다.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 선생님, 아이들이 삼위일체가 되었으니 돼지를 키우는 일이 가능했을 것이다. 모든 아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 P짱을 생각하는 것과 한 아이는 P짱이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바람쐬어주는 등 아이들의 순수한 눈동자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속에 메아리치며 감동으로 다가온다.

요즘 TV뉴스를 접하다보면 정말 보기 두 무서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점점 무시되고 있는 요즘 P짱은 내 친구를 보면서 생명의 존엄성과 음식에 관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 끝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꿈을 발전시켜주려는 참교육 임원들과 학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Have a good day~~^^감사합니다.

●○평화인권영화제 참가자 소감 녹취록①

〈P짱은 내 친구〉(돼지가 있는 교실) 드라마 | 일본 | 109 분

18년 전 오사카 초등학교의 실화이자 TV 다큐멘터리로 방송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영화. 잘 키워서 먹기 위해 돼지를 기르는 과격적인 체험 수업을 제안하는 신참 교사와 아이들이 1년 동안 함께 고군분투하며 정성껏 돼지를 키우는 생생한 모습을 담은 작품

- 일본의 교육 문화에 대해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끝까지 토론하고, 토론하고 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육 문화와 참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 붕어와 장수풍뎅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어요. 그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저를 보게 되어요. 그 동물들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죽으면 슬프니까. 영화를 보면서, 돼지를 죽여서 먹느냐, 아니면 밑 학년에게 물려주느냐, 어떤 결론이 이상적일까 생각했는데, 아, 정답이 없구나. 그것을 고민하는 과정이 정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정이나 결론 보다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 마음에 남겨진 것들, 추억이야말로 최고의 결론이구나.

- 저는 이 마무리가 불편했었는데, 우리의 불편함. 회피하고 싶음을 정면으로 직면하게 하는 게 영화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 영화에는 게임기, 핸드폰 등이 안 보이네요. 90년에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참 차분하고 정서적이지요. 토론하는 모습도 대단해요.

- 그만하면 되었을 않을까 싶을 만큼 끝장토론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 일본 영화를 보면 일본에서 살았던 시절이 생각나요. 8년간 살다가 지진으로 갑자기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잘 해요. 부모와의 대화가 참 길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고 결정의 시간을 기다려요. 어휘력, 표현력들이 참 놀라워요. 처음에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했고,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그 과정에서 존중받는 느낌, 여유를 배우게 되었어요.

- 오랫동안 고민하고, 서로 끝없이 같은 말이라도 말하고 들어주고, 결정된 뒤에는 뒷말하지 않고 같이 책임지는 모습도 좋았어요.

- ‘하나’는 전학 왔는데도 전 학교 교복을 입고 다녀요. 참 범상치 않은 아이지요. 그래서인지 피짱한테 남다른 애착을 보이기도 하지요. 피짱을 계기로 아이들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는 교복을 벗어요. 아무도 벗으라고 말하지 않고, 기다려 주는 것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돼지를 먹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이어받는 것. 그런 깨달음을 아이들이 말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 육식에 대해 한 번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감성적인 아이들의 모습이 참 예뻤어요.

-요즘 밥상머리 교육을 이야기하는데, 영화에 나오는 아빠, 엄마 모습이 참 좋았어요. 친구처럼 스스럼없이 이야기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평화인권영화제 참가자 소감 녹취록②

〈평화교육〉 다큐멘터리 | 캐나다 | 54분

유고내전으로 인해 25만명의 사람들이 희생했다. 이 지역의 아이들은 전쟁 폭력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과연 전쟁 폭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지역의 아이들에게 평화의 언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 학교 폭력으로 아들을 잃고 난 후 평화교육활동가가 된 해티는 이 영화에서 캐나다를 벗어나 세르비아 벨그라드의 한 학교에서 아이들과 선생님과 함께 ‘평화의 만남’을 시도한다.

- 세르비아 음악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 전쟁을 즐긴다, 50년 동안 기다렸다는 아빠의 모습이 참 놀라워요. 전쟁을 이용하는 사람, 전쟁을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소름끼치네요.
- 저는 평화라는 게 교육으로도 받을 수 있고, 나의 내면으로 들어와서 평화로운 사람이 되고, 그게 번져가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신선했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으로도 한 땀 한 땀 전달이 되어 아이들이 자유롭고, 자기 내면의 폭력들이 어루만져지고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주인공의 말씀이 크게 느껴졌어요. “어떡하든 삶은 굴러가는 것이다. 의미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다.” 고 하잖아요.
- 나는 늙어서 폐지롭지나 않을까? 연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이 큰데, 나도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 아빠가 아내를 죽이는 등의 처참한 폭력과 상처가 교육을 통해 어루만져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시작이 이렇게 커다란 일을 해낸다는 것이 놀라워요.
- 평화라는 것에 새로운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전쟁에 더 에너지가 많이 듦다고 생각했거든요. 세르비아의 집단 학살이라는 엄청난 나라에 평화 교육을 하려 간 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놀랍고, 평화를 지키는 게 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하는?
- 국가, 사회에 의해 개인이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게 참 아팠어요. 생존의 문제도 해결 안 된 시대의 불안이 고스란히 우리를 통해 또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 같아요.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이 대물림을 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세르비아 교사들이 지식의 전달자인 교사였다가 평화 교육을 통해 바뀌어 나가죠. 점차 인생을 함께 고민해나가는 존재로 스스로를 다시 자리매김해나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 자신의 아들을 학교 폭력으로 잃고, 세르비아라는 위험한 나라에 평화교육을 위해 가서 의미있는 삶을 시작한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경험이든 바꿀 수 있는 건 나구나 하는 깨달음이 드네요.
- 우리도 비폭력과 평화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을 이제부터라도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인권이나 평화는 힘있는 자가 먼저 깨우쳐야한다는 생각을 해요. 세르비아는 전쟁으로 인한 아이들의 내상,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기 위한 평화교육을 나라에서 시작을 하지요. 선생님들이 먼저 캐나다까지 가서 연수받고, 느끼면서, 2003년도에 평화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걸 보고, 정말 앞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민지, 분단, 전쟁 우리도 치유할 게 많은데도 우리 교육은 여전히 국영수 중심의 교과과정이잖아요.
- 요즘, ‘생존’에만 급급하게 만들려는 일정한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에게 더 높은 욕구 - 평화, 인권, 조화 등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만들죠. 더 하등의 삶을 강요하고 있어요.
- 어제 감정에 치우쳐서 아이들에게 화낸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아요. 아이들은 약자고 무방비상태인데 말이죠. 반성하게 됩니다.
- 다른 삶의 맛,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 평화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비극과 슬픔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게 동력이 되어 궁정의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더 멈출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슬픔이 동력이 되어서 살아질 수 있구나 싶어요.

- 그런 삶을 사신 분들, 우리나라로 전태일 열사, 이소선 열사, 박종철 아버지 등 참 많은 분들이 있어요.

- 다음에는 이소선 어머님 삶을 다룬 ‘어머니’ 영화 볼까요?

●○평화인권영화제 참가자 소감 녹취록③

<달리는 차은> (<시선 1318> 중) 드라마 | 한국

새만금 바다는 메워져 육지가 되고, 달리는 것을 좋아하는 차은의 육상부는 해산한다. 코치는 육상부가 있는 도시 학교로 전학 가자고 제안하지만 아버지는 차은을 보내려 하지 않는다. 필리핀 출신의 새엄마는 속상해 하는 차은의 마음을 풀어주려 서울 나들이를 계획하는데…

- 필리핀에서 온 엄마와 차은이의 답답함. 이해받지 못함이 마음으로 전달되어요.
- 엄마의 시선으로 차은이를 보니까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 권위적이고 대화하려 하지 않는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 차은이가 울 때, 엄마를 밀쳤는데, 다시 차은이를 안잖아요. 그 엄마가 참 대단하다 싶네요. 자신도 어려울 텐데요.
- 남자친구가 차은이에게 ‘좋아하면 그려는 거 아니야’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남자 중학생들은 예나 지금이나 왜 그렇게 짜질한가요?
- 울고 싶을 때 확 울어야 하는데, 우리는 참으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이라는 테두리 안에 가둬놓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우리 아이들의 폭력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요. 전쟁과 분단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서 그럴까요?
- 그런 상처를 바른 방법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했던 데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 방과 후 수업을 아이들 마음을 다독여주는 걸 했으면 해요. 방과 후까지 국영수하지 말고요. 스파이더맨 영화를 학교에서 보여주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가정이 열악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참 한심해요. 그 아이들을 다독일 수 있는 귀한 자린데 말이죠.
- 필리핀 엄마와 소통 안 돼서 힘들어하는데요. 우리는 말은 통하는데 더 소통 안돼요. 오히려 말이 더 방해가 되어요.

2012 아버지교실
우리 아빠 최고!
자체평점 : ★★★★☆

1. 기획의도

-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되돌아본다.
- 가정에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익혀 학교 폭력을 예방한다.
- 가정을 넘어 평화로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버지들의 역할을 고민해 본다.

2. 진행개요

일정	제목	강사
8/31(금) 저녁 7:30 북부교육지원청 회의실	원더풀 아빠의 청춘♪♪	김현수 (명지대 신경정신과 교수)
9/7(금) 저녁 7:30 북부교육지원청 회의실	아빠같은 아빠가 될테야 - 까칠한 자녀와 소통하기	송형호 (서울시교육청 인권교육센터)

[추진 실적]

- 직장인, 아버지 70여명 참가
- 후속 강의: ‘아버지, 사랑하면 아이와 함께 놀아라’ 진행(백운중 교사 김영일)
- 후속모임 매월 진행 중

3. 행사사진



4. 참가자 후기

참가자 후기②
“자녀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아빠”

한상희

항상 가족들 및 아이들과의 소통,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표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스누커(Snooker)라는 영국 포켓볼 선수로 활동 중이며, 안산 중앙역 앞에서 포켓당구클럽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 와이프 볼 시간도 별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아버지교실 역시 아내의 권유로 알게 되었고, 거의 와이프 혼자서 아이들 양육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고, 급변하는 세상에서 부모로서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직 아이들이 많이 크지는 않지만, 많은 호기심과 초등학교에서 부딪치는 일들(사회성) 그리고 아이들을 이해하고 좋은 방향으로 인도(사춘기의 행동 인지) 등 알아보고자 아버지교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교실에 오는 이동시간이 강의시간만큼이나 오래 걸리지만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는 김현수 선생님의 ‘원더풀 아빠의 청춘 - 아버지보다 훌륭한 교사는 없다’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보다 훌륭한 교사는 없다’라는 책자의 제목을 보고 일단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당구를 가르치는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집에서도 그런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무심코 한 사소한 언어와 행동 하나까지도 아이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의 아버지 상과는 지금의 아버지의 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항상 혼날까봐 전전긍긍하던 우리 시대와는 다르게 칭찬이 얼마나 중요하며 자상함 및 관용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았습니다. 옆에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아버지, 그리고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도 동기유발적인 발언을 해주는 것. 이것은 쉬우면서도 무지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선 알고 있지만, 입으로는 안 좋은 말들이 튀어 나와 버리는……. 상처 받기보다 사랑만 받기에도 충분한 자녀들에게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많은 걸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송형호 선생님의 ‘아빠 같은 아빠가 될테야 - 까칠한 자녀와 소통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어려서 까칠한 자녀들이 아니지만, 예습하는 기분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약간 자유스럽게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생각이 긍정적이며, 자신의 일은 알아서 잘 하는 편입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부모의 지나친 개입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잘 펴지 못하고, 빼딱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의 영향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무언의 자신의 욕구 행동 표출이라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행동들을 했으니까요.^ 강의에서 배운 3단 어법(니가 _하면, 내마음이 _해. 왜냐하면 난_)으로 집에 가서 아이들이 실수나 잘못을 하였을 때 대화를 하였더니 이해들을 잘 하여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그 자체로 인정해주며 비교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녀들의 말과 행동에 先공감하는 자세, 아이들은 부모의 판단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이건 어느 정도 잘하는 것 같아요. 와이프가 제게 ‘오버쟁이’라고 해요.ㅋㅋ) 물론, 와이프에게도 공감을 항상 먼저 해야겠습니다. 남자들은 자기의 결론을 먼저 말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칭찬과 몸짓 언어를 하여 자녀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연습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이 올바르게 선 아이들이 이 나라를 올바르게 끌고 가는 원동력이 될 테니 말입니다.

이상 길지 않은 시간동안 제가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이 내용들은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사이에도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와 소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소통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사회의 문제들과 학교폭력 등 까칠한 자녀들로 되어갈 때 그들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아빠가 되려고 합니다. 바로 아버지교실 제목 <우리 아빠 최고!>처럼요!^

참가자 후기③

“너무 요긴한 시간이었습니다.”

박기철

북부교육청 강당에서 있었던 학부모를 상대로 한 교육(2일간)을 받고, 너무 많은 반성과 아이들과 어찌 소통해야 할지를 감 잡았네요. ㅎㅎ 너무 감사하고 싶어 후기를 올립니다.

딸아이 학교에 아이의 학업문제 상담차 담임선생님을 뵈러갔다가 학부모회 강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와의 대화도 평소에 많지 않았던 터라, 아이와의 학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회의 존재는 아주 작으나마 제게는

한줄기 가는 빛 같았습니다. 보통의 아버지들이 다 그럴듯하지만, 아이들과의 대화의 대부분은 용돈을 미끼로 한 아주 짧은 대화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야식을 무자개 좋아하는 아이들과 짧은 야식타임을 포함하여 그리 많은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려서는 야외에 많이 나가는 편이었는데 중학생이 되고 보니 그 횟수와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아이들 공부는 엄마차지가 되다보니, 더더욱.(아니 학원 차지겠지) 그러던 차에 성적 또한 계속 하행 조정되는 지라 막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러하듯 딸아이만 잡았지요. 그래도 효과는 없었고, 그래서 학교 담임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던 차에 아버지교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기대가 무지막지~~~~~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북부교육청 3층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으러 가면서 기대가 많았습니다. 처음 이런 강의를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첫 날 강의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아 그래 그렇구나~~~~’ 하는 시간이라면 될까요? 표현이 참 ㅎㅎㅎㅎㅎ

둘째 날 강의는 더욱 좋았습니다. 재미도 있었고, 몇 가지의 사례는 내가 하고 있는 실수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일 마음에 다가온 것은 아이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과의 대화를 아주 아주 조금씩 바꾸어 보려 노력 중입니다. 우선은 큰소리보다 작고 차분하게, 회초리보다 이해를 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후기④

“공감을 배우는 아빠의 사랑”

박영해

안녕하세요? 저는 코레일 전동열차 기관사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3학년의 개구쟁이 두 아들의 아빠이기도 하구요. 평소 아이들 교육에 대해 약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여느 아빠들처럼 마음은 있으나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것은 아닌 그저 마음만 가지고 있을 그런 아빠입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또 중학교를 들어간 큰아들과 관계를 생각해보면서 요즘 특히나 재가 왜 저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마음 같아서는 둥둥이로 불기짝을 내려쳐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았죠. 하지만 머리가 굳어지는 아이를 예전처럼 매로 다스릴 수도 없는 상황이 많더라구요. 중학생아이가 학교에서 아버지 교육이라는 안내장을 가지고 왔는데 참석에 마음은 있었지만 막상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하자니 썩 적극적인 마음을 들지 않은 가운데 시간이 흘렀죠. 모임 첫날이었는데 오후 8시쯤 퇴근하면서 아내에게 퇴근중이라고(늘 보고함)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 대신 직접 아버지모임에 동네 아래층 아주머니랑 함께 와 있다더군요. 나도 빨리 모임장소로 오라기에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뭘 가냐면서 집으로 갈려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듣는게 도움이 될거라면서 오라고 오라고 독촉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마지못해 참석을 했죠. 결국. 20여명의 아버지들께서 참석해 계셨고 한참 강연하시는 중간에 머리 푹 쑥이고 들어가 앉았습니다. 첫날 어리둥절하게 지나갔지만 몇 가지 도움이 된 것이 있는데 하나는 내 아이의 존재 가치로 만족하고 행동 결과물로 평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즐겁고 기뻐했던 것은 아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나 주었기 때문임을

상기하고 지금도 아이가 학교 갔다 다시 집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마음으로 느끼고 있으면 아빠의 즐거운 마음이 아이에게 잘 전달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빠의 감정을 아이에게 전달하는 바른 방법을 배울 수 있었죠. “네가 이렇게 하니 아빠의 마음이 이러이러하다 다음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도 하루 한 두 번씩은 활용하고 있는 데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모임 둘째 날엔 시간에 잘 맞춰서 참석했고 전체 내용을 다들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말에 감정적으로 동일 감정을 표현해 주기는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기분이 상해서 들어오는 아이에게 충분히 들어주며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 주는 것은 아이와 아빠의 관계를 상당히 호전시키더군요. 예전엔 자기를 평가하고 훈계하려는 대상으로 보던 시각에서 자기편이 된 아빠를 느끼는 듯 하더라구요. 또 칭찬과 네가 최고라는 말과 표현을 통해 아이의 자신감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고 조금씩 노력하고 있죠. 사실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마음에 있던 궁금증이나 노하우 같은 걸 많이 배웠다고 할 수 있죠.

역시 나이가 들었다고 가만히 있으면서 아는 한도 내에서만 생활하기보다 무어라도 도움이 되는 건 참여해서 배워야함을 실감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모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주관해주신 여러분들과 특히 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민 창민아빠 박영해

참가자 후기⑤

“아버지교실은 나와 우리 가족에게 _____한 시간이었다”

-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준 시간이었다. | 이명승
- 어제를 돌아보며 내일을 꿈꾸게 한 시간이었다. | 박우태
- 아버지교실은 나와 우리 가족에게 심폐소생술과 같은 시간이었다.^^ | 한상희
- 아버지교실은 '싸이'였다. (놀이와 같이 재미있는 강의였다.) | 박기철

자녀와 함께 하는 평화인권가족캠프

지금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자체 평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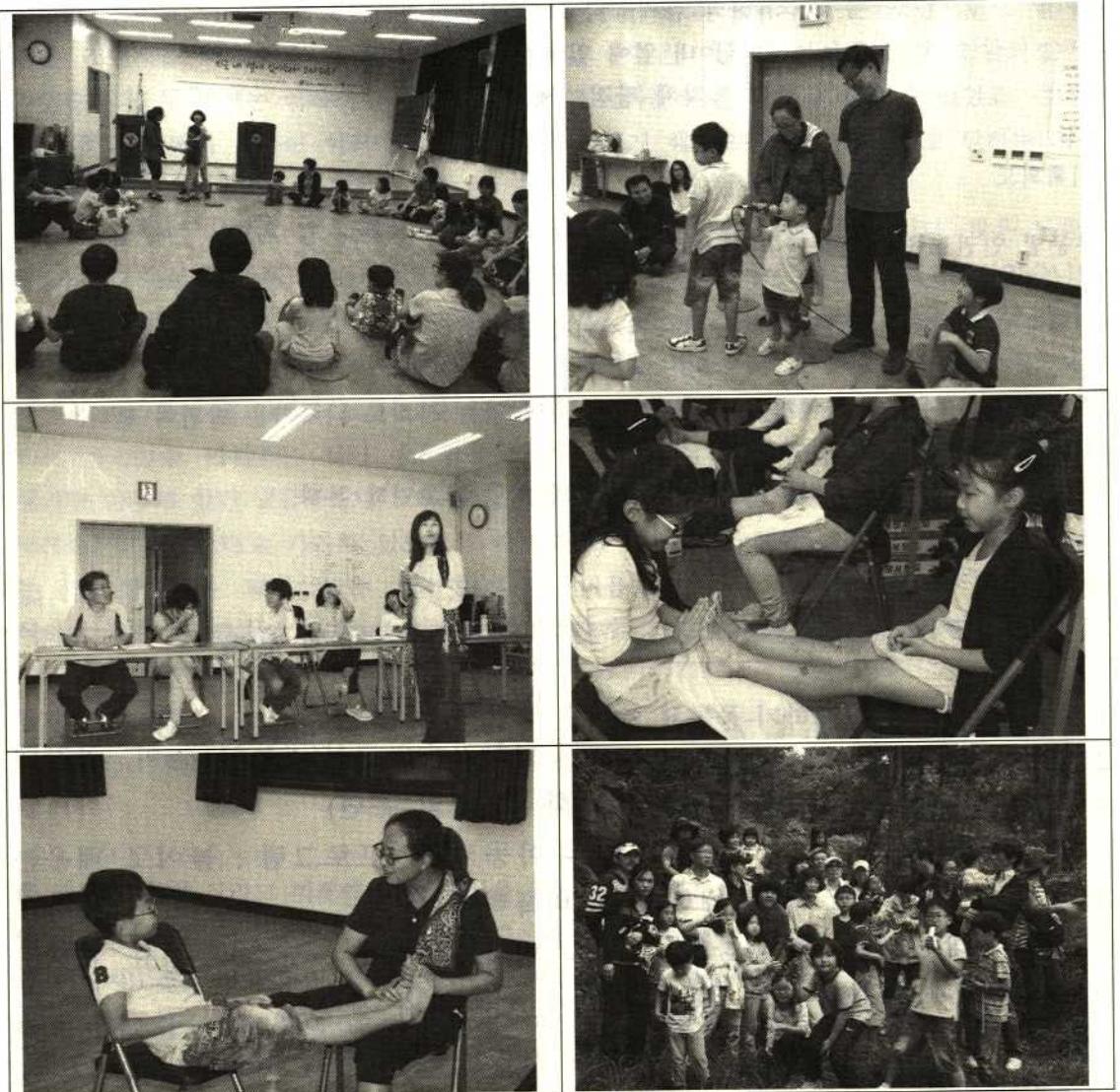
1. 기획의도

- 부문별 인권교육을 가족단위로 총화한다.
- 가족구성원 서로서로가 모두 소중한 존재임을 각인한다.
- 가족의 평화가 학교 지역사회로 확산될 때 폭력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된다.
- 평화로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족단위의 역할을 고민해 본다.

2. 진행개요

행사 내용	추진 실적
1. 몸으로 서로를 이해하기-공동체 놀이	- 15가족, 50명 참가
2. 강의- 까칠한 자녀와 대화법	- 평화가족워크샵(공동체 놀이, 공감대화 강의 및 훈련)
3. UCC 동영상 관람-폭력과 장난 사이, 우리 반 재민이	- 아동 대상 프로그램 : 놀이로 배우는 비폭력대화
4. 가정, 학교, 지역의 비폭력대화 실습	- 평화가족캠프 : 느낌과 필요 표현하기, 발마사지 진행
5. 비폭력 대화 성공사례 나눔회	- 가족과 함께 걷는 숲길
6. 생명존엄과 평화의 가정 및 학교만들기 청소년 선언, 학부모 선언	- 인권가족 골든벨 진행

3. 행사사진



4. 참가자 후기

참가자 후기①

“지금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경희

설레는 마음을 안고 가평으로 출발! - 스마트폰과 게임에 익숙한 우리들. 실뜨기 하나로 도착할때 까지 모두 스마트폰이여 안녕!

처음 만나 어색하고 쑥스럽지만 자기소개도 하고 우정테스트와 홀라라 박수로 즐거워 했지요. (캠프내내 여기저기서 우정테스트를 열심히 했답니다. 우정테스트가 궁금하시다구요? 와글와글 놀이터에 오세요. 다 알려드립니다.)

평화가족워크샵- 김미경선생님과 비폭력대화.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는 소중한 시간. 아빠들의 마음 깊은곳도 볼 수 있었지요.(이 시간 만큼은 부부싸움을 절대 안하고 살 수 있을거 같았지요. 그러나...^^)

평화가족캠프 - 모두 모여 서로에게 발마사지를 해주는 시간- 냄새난나고 투덜대는 어린이도

있었지만 서로의 발을 마사지 해주는것 만으로도 사랑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어요. 서로에게 편지를 쓰고 발표하는 시간에는 웬지 눈물도 울컥!

선생님께도 발 마사지를 해 준다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 냄새 날까봐 걱정하시는 선생님^^

가족과 걷는 금길- 출렁 눈을 부비며 아침을 먹고 축령산 산책길로 출발.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덕분인지 힘들다 투덜대던 아이들도 어느새 웃음꽃이 활짝. 아이들 손에는 저마다 잣나무 열매가 한개씩.

도전골든벨- 상품도 없는데 열정적으로 퀴즈를 맞추는 아이들. 어른들을 지쳐 있는데 아직도 기운이 남아있는지 줄넘기까지.

1박2일이라는 짧은시간이었지만 모두의 얼굴에 웃음과 행복이 피어났습니다. “ 지금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참가자 후기②

“평등이 폭력을 막는다”

정경희

주말 아이의 바이올린, 축구, 도서관 프로그램을 미루고, 나의 미디어강좌, 영어특강을 뒤로한 채 1박2일 평화캠프에 올랐다. 늘 빠빠한 일정에 지쳐있는 남편을 위해 신청했으나 가게 직원의 경조사로 정작 가야할 사람은 못가고 8살, 5살 아이를 데리고 혼자 가려니 심란했다.

최근 아이 학교와 중랑구에서 연달아 ‘학교폭력 예방법 및 사후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피해가족대표가 나와서 강의를 했다. 요즘은 폭력이 난무하니 여기저기서 교육이다. 열심히 들었다. 사실 제목에서처럼 예방은 아니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사고 나면 무조건 117에 신고하라는 예기였다. ‘상처받은 아이 마음에 폭력이 깃든다’라고 하는데 예방법의 근원이 위낙 광범위하니까 다들 대처법만 논한다. 그래서 이번 참학캠프가 기대되었다. 비폭력대화, 평화캠프? 과연 무엇을 말할까 궁금했다. 그리고 참학 회원들의 분위기도 보고 싶었다.

엄마는 두 아이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는데 아이들은 스스로 너무 잘 논다. 엄마가 싸온 현미유부초밥 도시락은 먹지도 않고 다른 가족들의 김밥을 엿보고, 딱히 어린아이들이 놀만한 장소가 없는 장소인데도 또래들끼리 놀이를 찾았다. 감기기운이 있는 아이들을 걱정하는 엄마는 아랑곳없이 아이들은 생기가 넘쳤다. 컨디션이 나쁜 건 오히려 엄마.

드디어 기다리던 비폭력대화 김미경 샘의 강의, 요즘 아이들의 폭력은 제대로 놀지 못해서, 행복한 어른들을 만나지 못해서, 그 속에 우울과 불안, 두려움이 가득해서 나온다는 말에 크게 공감했다. 그리고 평등한 대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들었다. 역사적으로 지배구조와 피지배구조에서 생기는 폭력대화의 근원...

성장제일주의로 가정, 학교, 직장 모두 지배구조 시스템이었다는 얘기다.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했고, 경쟁이 전부였다는, 그래서 지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맞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인정하지 않고 자꾸 소통 대화법을 논하니 불편하기만 했던 거다. 남편이 돈 못 벌어 오면, 아들이 공부를 못하면 무능하고 답답한 거다. 그런 눈초리를 받는 ‘나’는 바보인 거고, 그렇지 않은데 바보라고 인정하려니 화가 나는 거고, 그러니 폭력적이 된다? 다 맞는 말이었다. 아이, 남편을 평가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회를 평가하기에 바빴다.

그 평가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익숙한 게 편한 것. 폭력은 내게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타인에게 향해 있는 눈을 나로 돌리고, 인정하고 나면 한결 수월해지는 대화법을 듣고 행동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화법 강의는 많이 들었으나 연습해보거나 행동해보기는 처음이었다. 생각보다 어려웠다. 고정관념이 얼마나 두터운지 확인한 시간.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 넘게 까지 진행된 강의였지만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 아이를 잊었다. 함께 오지 못한 남편도 생각나지 않았다. 엄마로, 아내로, 선생님으로 ‘나’를 돌아보고 채워나간 시간이었다.

그 시간 아이들은 내내 엄마를 잊고 재미나게 놀았다. 긴줄넘기, 실뜨기, 배게싸움, 이불놀이, 김밥놀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숨바꼭질 등 무궁무진한 놀이로 새벽 1시까지 깔깔 웃었다.

참학 캠프는 선생님들이, 주최 측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캠프였다. 정성스레 준비된 많은 놀이, 상이 없어도 행복한 퀴즈, 캠프파이어가 없어 서운할 틈도 없이 속을 꽉 채우고 온 실속 있는 캠프였다.

“엄마 우리 다음에도 꼭 다시 이 캠프에 오자 용?” 8살 아이의 말이 행복하다.

참가자 후기③

“가족캠프를 다녀와서”

남연승

캠핑을 가기 전 아버지 학교에서 만난 강사님과 아버지들은 개인적으로는 친구이자 형님이었다. 나중에 더 친해져서 알게 되었지만, 참으로 순수한 친구이자 아버지였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유는 그 많은 아버지 중에서도 바른 아빠가 되기 위해 수업을 들으려 했기 때문이다. 물론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어도,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멋있었다. 모든 아버지들이, 또 내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지만, 돌이켜보면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기도하고, 아이디어를 빼앗기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아버지학교에서 만난 사람들, 아버지들, 형님들, 친구들은 나에게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로 다가왔다. 아이를 위해서 참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수업을 그리고 교육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람적이고 인간냄새가 풍기는가..... 난 그런 사람 냄새나는 사람이 좋다.

캠핑은 그런 사람 냄새나는 아버지와 함께해서 즐거운 가족들의 모임이자 나에게는 새로운 만남의 자리였다. 전날 과음을 했지만 만나서 즐거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피곤하지 않다.

나는 돌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서 여행과 캠핑을 즐기는 편이고 가족과 함께 많이 다니는데, 이번 캠핑은 내 가족만이 아닌 다른 가족들, 그래서 이웃의 피곤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다. 돈도 아닌 명예도 아닌 일에 열정적으로 희생하는 사회의 도우미를 자청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와 같이 있는 분들이 의사나 검사가 아니어도 좋다. 돈이 많거나 잘난 사람이 아니어서 더 좋았다. 그냥 이렇게 아이들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아버지여서 어머니여서, 그런 분들이 내

친구이고 형님이여서 난 행복했다. 감사드립니다.

참가자 후기④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신의정

남편은 학생 때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람이었고, 결혼을 해서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고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갖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참 성실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가족들에게는 엄격하고, 무뚝뚝하고, 이성적인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서 큰 딸은 아빠와의 관계가 소원하고, 아빠와 이야기 하는 것도 꺼리고, 아빠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무서워했다. 나 역시 남편의 무정한 모습에 상처도 많이 받았고, 공감하지 못하고 도덕적인 이성적인 판단과 평가만을 하려는 남편이 싫기도 했지만 안쓰러움도 있었다.

그러다가 3년 전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속된 말로 필름이 끊기고 축 쳐져버린 아빠의 모습을 본 딸은 아빠가 죽은 거라면서 엄청 울고 무서워했고, 그 이후 아빠가 술을 먹는 것에 극도의 거부감을 갖게 되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남편과 나는 구청에서 하는 알코올중독 상담도 받았고, 남편이 아버지학교에 다니기로 약속을 했다.

8월에 있었던 2번의 아버지학교를 갔다 오면서 정말 남편은 놀랍도록 편해졌다. 아이들에게 이성적인 아닌 감성적인 말로 접근했고, 예전에는 바로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고 혼낼 일도 절대 혼내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었다. 술자리도 많이 줄이고 최대한 아이들과 몸으로 놀아주려 하고, 많은 스킨십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집에서 혼내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은 남편이 아닌 내가 되었다. 조금 까칠함이 있는 딸도 “왜 엄마는 아빠처럼 공감을 안 해줘??”라고 나를 질타하고 있으니 말이다.

아버지 학교 이후의 놀라운 남편의 변화에 이은 온가족 평화인권 캠프에서 비폭력대화에 대한 김미경 선생님의 강의는 2살짜리 아들 덕(??^)으로 다 듣지 못했지만, 남편은 너무 감명을 받고 뉘우쳤다고 한다.

저녁에 가족끼리 로션으로 서로의 발을 마사지를 해주는 시간에는 2살짜리 아들은 한 발만 마사지를 해주니까 너무 좋았는지 다른 발도 해달라고 떡하니 내미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남편은 부드럽게 발마사지를 해주지는 않고, 직업병이 활동해서 혈 자리 위주의 치료적인 마사지를 해줬지만, 내 발을 정성껏 만져주는 것이 너무도 고맙고 흐뭇한 시간이었다.

늦은 밤 뒤풀이 시간에 간단한 술자리에 직접 술을 사러 갔다 왔던 남편은 아들을 재우다가 그냥 잠들어버려서 남편도 다른 부모도 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해 너무 아쉬워했다. 술을 좋아하는 남편이 그냥 자는 것을 보고 일을 마치고 늦게 합류한 남편이 많이 피곤했구나 생각에 측은했다.

다음날 아침 깨우지도 않았는데 일찍 일어난 아이들과 뒷산을 올랐다. 평소 산에 가는 것을 싫어해서, 계속 짜증부리는 딸을 남편은 계속 달래고 안고 하면서 올라갔다. 나는 그런 딸의 모습이 싫어서 화를 냈고 즐거워야 할 캠프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안타까웠을 찰나, 같이 가시던 학부모회 회원 분께서 정말 능숙하게 아이들을 공감하고 달래는 모습에 놀라웠다. 특히 “아이에게 짜증을 내고 이로 인해 더 침울해진 아이를 다시 기분 좋게 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처음부터 힘들지만 아이와 공감하고 달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더 적다” 말씀은 큰 깨우침이었다.

캠프 이후에 아이들은 자연이 준 기운으로 에너지가 많이 충만해졌고, 남편은 아이들과 더 많이 어울리기 위해 캠핑장비를 구입하려고 한다. 남편과 아이들 이렇게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참가자 후기⑤(아동)

강미연

출발부터 버스 안에서 유치부 선생님과 함께 실뜨기와 손뼉치기를 하고 놀았다. 재미가 없을 때 즈음 몇 분 지나니 금세 캠프장에 도착해 있었다.

점심을 먹을 때도 유치부 선생님의 마술도 보고... 역시 시작부터 즐거웠다.

방 배정을 먼저 받고 우리 짐을 옮겼다. 우리는 서윤이네 가족과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다. 엄마아빠와 떨어져 우리는 스마일키프스를 진행했고 그 후 다시 가족과 만나 발마사지를 해주었다. 엄마랑 아빠는 서로 마사지를 양보하며 난 결국 엄마의 발을 마사지 해줬다. 특별한 날이다.

저녁시간 자기 전에 우린 우리 방에서 서윤이와 서원이 그리고 내 동생 초빈이와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즐겁게 놀다가 겨우 잠들었다. 자기 싫었는데 엄마가 자꾸 자라고 했다.

둘째 날은 산에 오르는 것이 특별히 재미있었는데 뱀, 특히 독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서 무섭기도 하였다. 또 산에 오르면서 태풍에 떨어진 잣도 주웠다. 몇몇 아이들이 잣은 비싸다고 돈을 받고 팔고 싶어하기도 하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나였다. 엄마 아빠 친구가 함께한 신나고 즐거운 캠프였다.

참가자 후기⑥(아동)

하윤이의 일기

나하윤

2012년 9월 16일 일요일 하늘이 울상

제목: 가평 가족평화 캠프

가평 서울시 교육청 연수원에서 1박 2일로 비폭력대화 가족평화캠프를 했다. 형과, 누나들이랑 신나게 놀았다. 엄마도 잘 놀기만 하라고 했다. 저녁에는 엄마 발마사지를 해드렸다. 엄마 발은 엄청 컸다. 그리고 보들보들한 손잡을 때와는 달랐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었다. 내가 말을 안 하면 엄마는 가만히 있었다. 집에서도 엄마가 원하는 것 다 해줬으면 좋겠다. 다음 날 일찍 일어나 축령산을 산책했다. 잣도 있고, 다람쥐도 보았다. 내가 가장 잣을 많이 주워 기분이 좋았다. 가평 잣은 아주 유명하다. 유명한 만큼 고소하고 향긋했다. 다음에도 꼭 다시 왔으면 좋겠다.

아동평화인권강사양성과정

자체 평점 : ★★★★★

1. 기획의도

평화인권강사는

- 우리 아이들이 '존재 그 자체로서 소중한 나'를 느끼게 하고 나아가 주위의 친구도 존중 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돋는다.
- 자신과 친구의 권리를 알고 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돋는다.
-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돋는다.
- 나와 친구의 삶을 존중하며 밝고 행복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돋는다.
- 평화로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여한다

2. 진행개요

강연(6강)

: 서울시교육청 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센터 <들>과 함께 진행

날짜	프로그램
1강 10/5(금)	- 몸풀기 맘열기 - 인권의 특성 : 지글지글 보글보글 인권밥상 차리기 : 인권의 특성 정리 PPT
2강 10/10(수)	- 몸풀기 맘열기 - 인권 감수성 키우기 : 내가 경험한 인권/차별상황 한 장 : 인권감수성 PPT
3강 10/12(금)	- 몸풀기 맘열기 - 소수성과 차이·차별 : 차별 터널, 연결 상황극 : 반차별 정리 PPT
4강 10/15(월)	- 몸풀기 맘열기 - 어린이 인권 집중탐구 : 그림책, 놀이, 동요, 미술활동으로 만나는 어린이 인권교육
5강 10/19(금)	- 몸풀기 맘열기 - 청소년 인권 집중탐구 1 : 문제적 인간을 소환하라. 신호등 토론
6강 10/19(금)	- 몸풀기 맘열기 - 청소년 인권 집중탐구 2 : 가해자 소환 활동 등을 통해 만나는 청소년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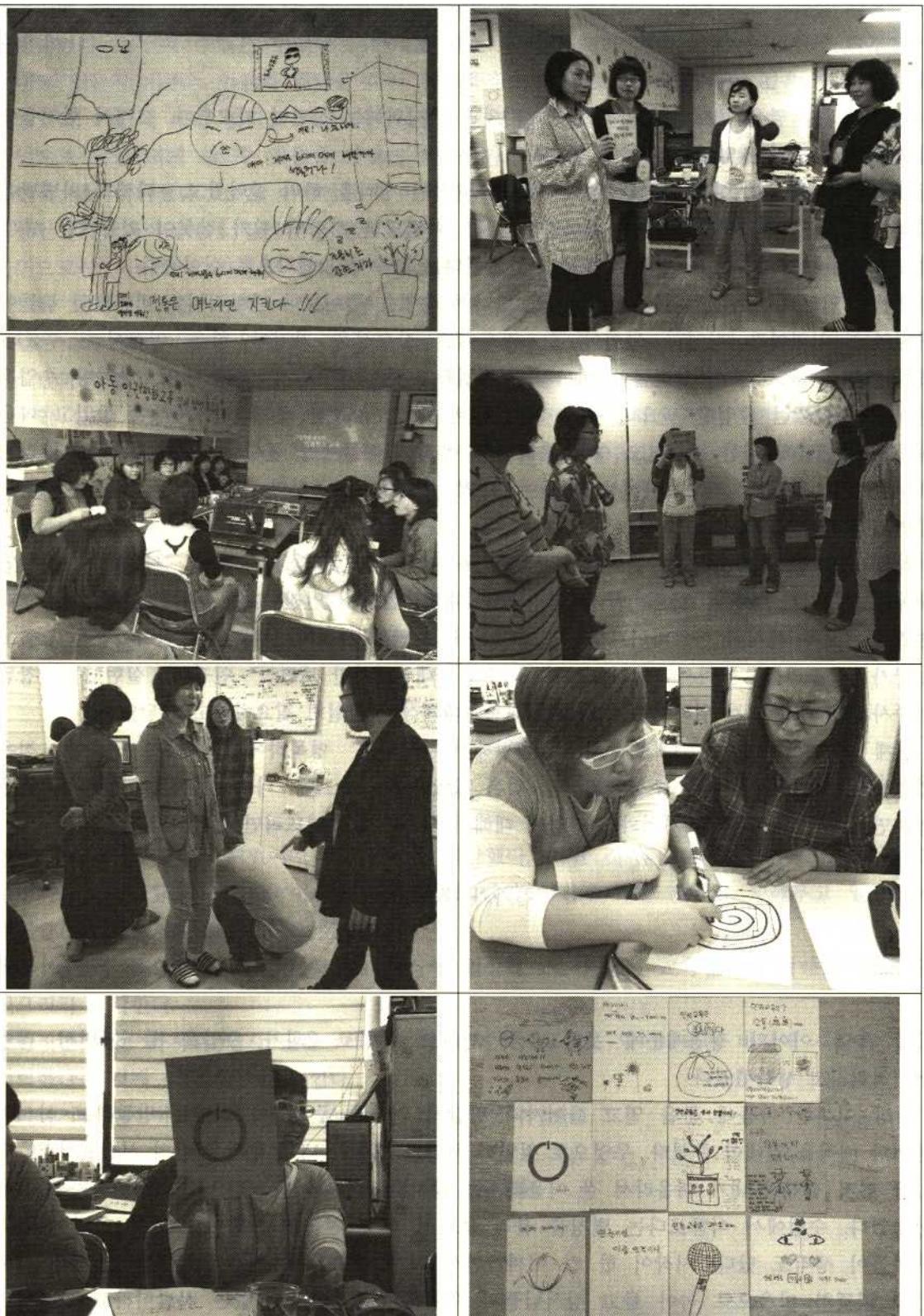
후속 사업

- 아동인권강사 12명 정기적 모임으로 인권교육 교안 연구 및 작성, 실습 진행 중

성과

- o 학부모교육이수자들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o 인권교육 자료는 학교폭력예방 강사단의 자료DB로 활용
- o 아동 인권교육 정기적으로 진행
- o 학부모 아동인권평화교육 강사단 운영-12명의 강사풀이 마련되어 이후 지역에서 강사로 활동 예정

3. 행사사진



4. 참가자 후기

참가자 후기①

이미란

'인권'이라는 말을 들으면 저항하고 몸부림치면서 시위하는 장면이 떠오른다. 그래서 힘겨움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좋게 둉글게 살고 조금만 참지 하는 소극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왔고, 다행히 차별받은 기억이 별로 없던 지라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 차별당한 사람이 뭔가 잘못이 있을거란 생각, 유교주의적 사상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면 안된다는 보수적인 생각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을 만나서 수업을 들어보니 반항적이고 비판적인 분들이 아니었고 인권이란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이고 감수성을 가져야 함을 인식시켜 주셨다. 또한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주면서 열린 수업, 참여형 수업을 전개하셨다. 그런 수업을 받으니 우리 자신이 존중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 속으로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도 쑥쑥 올라왔다.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존경해야 된다 라고 의무감으로 던지는 말 보다 선생님들이 먼저 학생을 존중하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도 자연스럽게 생기리라.

인권관련영상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 '교육청 지원밖의 장애인 교육권', '13년간 남편의 폭력 끝에 사망한 아내의 절규', '인권변호를 위해 앞장선 조영래 변호사', '오후 세시의 아르바이트생들의 강제휴식' 보면서 그들의 삶이 되어 안타까움을 느꼈고 누군가 목소리를 높혀서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참된 민주사회가 되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라는 사회연대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깨달았다.

현재 여기에 있는 '나'로 부터 출발해서 부모라는 명목하에 자녀를 구속한 적은 없었는지, 모임에서 나의 주장만을 편 적은 없었는지, 뉴스에 나오는 다른 이들의 사건을 접하면서 내 안에 고착된 가치와 편견들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깨뜨리면서 살아가련다.

참가자 후기②

이은이

첫 수업 아이의 장염때문에 못가고 첫 인사도 못하고 2회차 수업을 들어가면서 많이 어색하리라고 생각했었다.

막상 어색한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서 별명을 만들라고 하시며 종이와 매직을 건네어 주셨다. 무엇으로 정할까 하다가 그동안 너무 주위 사람의 시선에서 늘 내 맘을 먼저 접었던 내가 떠올라서 잘 어울리지는 않지만 꿈을 쪘는 느낌으로 야심이라는 별칭을 만들었다. 수업에서 이름보다는 별칭을 불러 보면서 더욱 친근한 느낌이 오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생각도 났다. 시작이 한 칸 비껴가면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되던 것은 서로 간에 따뜻한 마음으로 녹아 들고 강사님들의 수업은 나름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나의 오만함을 보기 좋게 깨주었다. 서로 간에 협동하여 하나의 원을 만들고 차별의 터널을 지나면서 이론적 이야기가 아닌 피부로 느껴지게 만들고 그것을 고민할 수 있게 해주시던 강사님들과 함께 한 선생님들! 첫 시간은 그렇게 설레게 끝이 났고 수업이후 따뜻한 점심 한상을

주셨는데 주부라 보니 누가 밥 한 끼 주는 것이 왜그리 반갑고 고맙던지..... 점점 빠져드는 느낌이었다. 두번째 수업은 현실에서 관계를 맺는 관계와 내가 얼마나 많은 편견의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 기존의 인권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라고 다시 고민하라고 하며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기존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보통이 기준들이 때로는 족쇄와도 같고 죄없는 사람이 죄인으로 낙인 되게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세번째 수업은 아이들의 인권을 동화책을 보면서 풀어나가셨다. 그런 이야기들이 아이들을 독립된 인격으로 만나게 해 줄 수 있음을 그동안 내가 아이들에게 잘못된 잣대로 맞추어 가고 있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런 미안함과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음에 희망을 보는 시간이었다. 네번째, 다섯번째 시간은 그렇게 재미있게 웃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즐겁게 수업이 진행되었다. 다섯번의 시간이 그렇게 짧게 지나갈 줄이야. 처음 시작할 때의 나를 돌아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동안 심리 수업도 종종 하고 상담에 대한 공부도 꾸준히 해왔지만 정말 한명 한명의 독립된 인격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고 느끼게 해주었다. 이번 인권평화 강사 양성 과정에 올 수 있도록 도와 준 저희 회장님 그리고 소개 시켜준 나의 고마운 친구 너무 감사합니다. 인권 교육을 받으며 가장 많이 느낀 것은 누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키우는 것이 아닌 서로 함께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온 몸으로 느꼈다. 이제갓 수정된 태아에게도 세상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이에게도 강자도 약자도 아닌 하나의 인격으로 만나야 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시작점이라고 가슴이 느낀 수업이었다.

참가자 후기③

김정연

인권 감수성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었는지를 절감했다. 어떤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은 항상 어렵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나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특히 인권을 몸으로 접근하는 체험형의 방식이 일상적으로 와닿는 교육실천의 형태를 갖출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쉽지 않다. 이 나이가 되면 아는 것도 잊어버리는 바람에 새로운 것을 입력한다는 것에 항상 한계를 느낀다.

안타깝지만 현실이므로 한 번 더 도전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참가자 후기④

홍지희

인권 교육 강사 워크샵을 모두 마치고 나니 빠지지 않고 참석 할 수 있을까 걱정 했는데 다행히도 빠지지 않고 모두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 교육을 첨 들으려고 생각 했을 때만 해도 별로 어려울 거 없으리라 생각했었다. 막상

교육을 접해보니 그동안 알지 못했던 부분도 많았고 배워야 할 것도 많았다.

독서치료를 배운 적이 있어 그림책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교육에선 그래도 아는 분야가 나오니 기분이 꽤 좋았다 이왕 1급까지 땠더라면 더 좋았을 거란 아쉬움도 들었다. 여러 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도 드렸음 한다.

아동 발달, 아동 심리, 구연 동화, 독서치료, 등등 관심도 많고 꾸준히 공부도 해왔다. 이 모두가 내 아이들 때문에 시작이 된 것 이었는데 이젠 그냥 내 아이 때문에 라는 생각이 사라지고있다. 혹시 책임감?, 아니 의무감? 아님 시어머니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건 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리고 그것이 보람 있고 내가 행복하다면 이 얼마나 값진 그리고 비싼 교육이었던가 다시금 생각해본다.

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서 알아 가길 바라보며 지금까지 함께한 샘들 강사님들께 너무 감사드린다. 난 요즘 몸은 너무 힘들지만 행복하다. 아이들도 그걸 느끼리라 믿는다.

평화인권관련 영상 데이터베이스 사례1

① 제목

70만원 비정규직 노동자

② 내용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37%에 불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조명한 내용

③ 인상적이었던 점

대한민국 전체의 8.8%가 최저 임금도 못 받는다.

④ 어떤주제, 어떤 인권교육을 할때 쓰면 적합할까

가난한 이들이 늘 가난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부지런하지 못해서일까?

⑤ 초,중,고 학생중 어디에 적합할까

초, 중, 고 모두 가능

평화인권관련 영상 데이터베이스 사례2

① 제목

모든사람-차별의 발견

② 내용

살색 → 연주황 → 살구색 : 두번이나 바뀐 색깔의 이름

모든사람은 피부색, 종교,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가지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세계인권선언 제2조

③ 인상적이었던 점

차별의 발견이 차별의 시정을 가져온다.

더 많은 차별이 발견되어야 한다.

④ 어떤주제, 어떤 인권교육을 할때 쓰면 적합할까

차별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 주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고, 어디서든지

발견되어야 한다.

⑤ 초,중,고 학생중 어디에 적합할까

초등학생에 적합한 쉬운 주제로 보임

평화인권관련 영상 데이터베이스 사례3

1.제목: 감정 노동자

2. 내용 : 현재 우리나라 전화상담원의 삶을 보여주며 전화라는 특성상 보이지 않는 대상자에게 언어적 폭력 감정이 없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감정 노동자의 모습을 다른 내용

3. 인상적이었던 장면 : 일하는 동안 난 감정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감정만을 관리하고 사용 그래서 점점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잊게 되는 노동자 - 감정 노동자 이부분에서 과연 전화 상담원만 일까 하는 의구심과 직업의 선입견에서 차별적 행동으로 더욱 많은 감정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인상에 남았음

4. 대상 :중, 고

평화인권관련 영상 데이터베이스 사례4

1. <나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2. 내용: 13년동안 남편에게 구타와 학대를 받은 여성 있다. 그녀의 남편은 부인을 구타한 다음날 집으로 꽃을 보낸다. 생일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니다. 그렇게 그녀는 13년 동안 맞다가 끝내는 죽었다.

3. 인상적이었던 점: 왜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을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연이다.

4. 어떤 주제, 어떤 인권교육을 할 때 쓰면 적합할까: 여성인권, 가정폭력

5. 고등학생 이상에게 적합할 듯하다.

■ 총평

2012년은 학교 내 폭력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된 해였다. 청소년에 대한 우려와 절망으로 온 사회가 들끓었던 해이기도 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동북부지회에서는 학교 폭력과 관련된 원인분석과 사회적 성찰보다는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져 청소년을 범죄인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학교폭력을 평화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 평화인권 아카데미를 기획하게 되었다. 기획에서 진행까지 서울시교육청 인권 교육센터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 학교폭력의 원인을 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접근했으며, 특히 가정 내 비인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평화 인권적 가정환경을 만들고자 학생, 부모, 가족 특히 아버지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다.
2. 이는 부문별 즉 학생, 학부모, 가족의 인권문제 조명과 확산에 기여하였다.
3. 폭력해결은 처벌적 차원이 아니라 인권평화의 문제라는 것을 지역에 인식시키는데 기여하였다.
4.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인권조례 안착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5. 평화인권이라는 단일주제를 가지고 서울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참교육학부모회 동북부지회가 함께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민관협치에 기여했으며 나아가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했다.
6. 북부지역에 인권 평화적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부모의 역할을 조명했으며, 이 사업을 계기로 지역 내 ‘학부모 인권평화지킴이’라는 모임이 결성되어 모임이 진행 중이다.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조례 5247호 학생 인권조례 전문

서울특별시조례 제5247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②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 상담, 돌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 교직원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휴식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 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

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할 경우에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그 정정이나 삭제,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부정확한 경우

2.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3. 정보수집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그 내용이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③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리
2. 학생총회,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사·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다른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부당하게 학생 자치활동을 금지·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 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식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
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
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의무교육과정에서의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 중
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
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의 시설 및 기
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
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
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피징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
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별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의 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키
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
다.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이 침해당했
을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 관련 사항에 관하여 학교의 장, 교육청,
지역교육청 그 밖의 관계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 등은 제2항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
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
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
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제29조(학생인권교육)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

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0조(홍보) ①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 등 학생인권에 관한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이 조례 전문을 알려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9조제2항의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 홍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교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연 2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직무 연수에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2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및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절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제33조(학생인권위원회) ①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

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5.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학생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7. 학생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8.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자문
9. 학생인권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평가
10. 그 밖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 수행에 있어 교육감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인권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에 관하여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 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5명 이상
2. 학생참여단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 2명 이상
3. 시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2명 이상
 5. 교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6.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7.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 ④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3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 4회 이상
 2. 임시회 :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회의 간사는 제34조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 담당한다.
-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생인권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학생참여단)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생참여단(이하 “참여단”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참여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참여단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끊어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3.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4.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5.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및 그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7.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

8. 그 밖의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참여단을 둘 수 있다.

제3절 학생인권옹호관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 1명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및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⑤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 「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2.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3.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4.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6. 학생인권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8. 학생인권위원회 및 참여단의 업무 지원

9.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0.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

제40조(보고의무)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결과를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매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겸직의 제한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며, 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절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영향평가

제42조(학생인권교육센터) ①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4.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6.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에는 사무직원을 둔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을 매년 교육감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경우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위원회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절 학생인권종합계획

제44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3.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5.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6. 교육과학기술부 및 다른 지역 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7.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8.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제45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의장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공청회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7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 지역교육청 별로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③ 제2항의 학생인권상담실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과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매월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학생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해학생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구제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제48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7조제1항의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되는 당사자(이하 “피해당사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조사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청 및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및 관계 공무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49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47조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인권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의 결과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가해자나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이나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⑧ 학생인권옹호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계인, 교육감 등의 조치결과 및 통보내용,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한 권고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50조(비밀유지의무) ①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구성원은 제48조제1항의 구제신청과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여 관련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부터 제41조제1항까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1조제2항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교육청 산하의 학생인권전문부서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
- 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6조)
- 다.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제9조)
- 라.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2조)
- 마.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제13조)
- 바.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제16조)
- 사.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제17조)
- 아.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
- 자.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제38조, 제42조)